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100100024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10.01.11.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3.11.28

www.dostacos.co.kr

[도스타코스]

정 보 공 개 서

[(주)도스타코스]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도스타코스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시 용산구 한남대로 18길 26, B1(한남동)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02-593-5904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

[가맹사업담당 부서 및 전화번호] : 영업부 / 02-593-5904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II. 가맹본부의 『도스타코스』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을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http://ftc.go.kr/data/hwp/20080306_103723.hwp)
 (http://www.ftc.go.kr/new_contents/info/info_021m.php?lawcode=09)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사용 브랜드	주 소			
(주)도스타코스	도스타코스	서울시 용산구 한남대로 18길 26, B1(한남동)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4.02.24.	2014.05.01	박성준	02)593-5904	-
	법인등록번호	110111-5348168	사업자등록번호	106-87-06036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와 특수관계인의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사용 브랜드	주 소		
대표이사	박성준	도스타코스	서울시 용산구 한남대로 18길 26, B1(한남동)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5.08 ~ 현재		박성준	02)593-5904	-

3.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도스타코스]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도스타코스의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도스타코스	
상 호	도스타코스 OO점	
상표(서비스표)		서비스표 등록(제41-0135255호)

4.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브랜드	인수·합 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주)도스타코 스	도스타코스	2017.04.	서울시 서초구 서초4동 1303-35 강남데시앙루브 104호	박성준
가맹본부가 계열 기업을 합병함	해당없음	-	-	-	-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인수함	해당없음	-	-	-	-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	-	-	-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현황

(1)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부가세별도

연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3	997,032	684,150	312,882	921,615	41,867	6,613
2022	1,081,354	775,085	306,269	1,560,301	17,154	9,507
2021	1,051,600	754,839	296,761	1,706,931	69,207	59,126

(2)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이외의 사업은 경영하고 있지 않아 (1)의 매출액과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이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사업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관련	박성준	대표이사	2014.05. ~ 현재	대표이사	사업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작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	--------	--------

2023.12.31	1(상근)	2
------------	-------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는 최근 3년간 도스타코스 이외의 가맹사업은 운영한 바가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출원일자 및 등록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등록만료일 (사용기간)
도스타코스	가맹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상품을 판매하고 대가를 수령할 권리	출원 2005.07.20. 등록 2006.07.24	출원 41-0135255호 등록 2005-0016878호	박성준	2026.07.24. (만료일까지)

- ▶ 당사는 상기의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해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의 정책에 따라 상기의 지적재산권 중 일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이에 관한 서류는 당사의 사무실에 비치하여 두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도스타코스]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2006년 10월 05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05년 09월 05일)

2. 도스타코스 가맹사업 연혁

당사의 도스타코스는 가맹사업 시작일 이후 가맹본부의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명의 변경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이름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 소재지
도스타코스	도스타코스	박성준	2005.08~ 2014.05	서울 서초구 서초4동 1303-35 강남대시앙루브 104호
(주)도스타코스	도스타코스	박성준	2014.05~ 현재	서울시 용산구 한남대로 18길 26, B1(한남동)

3. 도스타코스의 업종

영업표지	업종	
도스타코스	대분류	소분류
	기타외국식	서양식(멕시칸푸드)

4. 최근 3개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전국 및 16개 광역 지자체별 가맹점 및 직영점 총수

(단위 : 개)

지역	2023년도 말			2022년도 말			2021년도 말			비고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16	15	1	15	14	1	14	12	2	
서울	13	12	1	12	11	1	12	10	2	
부산	0	0	0	0	0	0	0	0	0	
대구	0	0	0	0	0	0	0	0	0	
인천	0	0	0	0	0	0	0	0	0	
광주	0	0	0	0	0	0	0	0	0	
대전	0	0	0	0	0	0	0	0	0	
울산	0	0	0	0	0	0	0	0	0	
세종	0	0	0	0	0	0	0	0	0	

경기	2	2	0	2	2	0	2	2	0	
강원	0	0	0	0	0	0	0	0	0	
충북	0	0	0	0	0	0	0	0	0	
충남	0	0	0	0	0	0	0	0	0	
전북	1	1	0	1	1	0	0	0	0	
전남	0	0	0	0	0	0	0	0	0	
경북	0	0	0	0	0	0	0	0	0	
경남	0	0	0	0	0	0	0	0	0	
제주	0	0	0	0	0	0	0	0	0	

5. 최근 3개 사업연도 말 [도스타코스]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3	14	1	0	0	0	15
2022	12	3	1	0	0	14
2021	12	1	1	0	0	12

6. [도스타코스]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현황

▶ 당사는 직전 3년간 해당사업 외에 가맹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 도스타코스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매출액은 아래의 표와 같을 것으로 추정되며, 표는 각 가맹점들이 세무 신고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을 산정하여 다음 표가 작성되었습니다.

지역	2023년 가맹점 말 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제외)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상한		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전체	15	432,051	26,072	883,001	79,135	201,953	13,463	14곳 산출
서울	12	449,437	26,699	883,001	79,135	201,953	13,463	12곳 산출
부산	0							5개 미만
대구	0							5개 미만
인천	0							5개 미만
광주	0							5개 미만
대전	0							5개 미만
울산	0							5개 미만
세종	0							5개 미만

경기	2							5개 미만
강원	0							5개 미만
충북	0							5개 미만
충남	0							5개 미만
전북	1							5개 미만
전남	0							5개 미만
경북	0							5개 미만
경남	0							5개 미만
제주	0							5개 미만

* 가맹점사업자 1명당 연평균매출액 산술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text{전체 가맹점 연간 총매출액}] / [\text{전체 가맹점 총 영업개월 수}] \times 12\text{개월}$$

* 자료 확보가 안된 안양범계점을 제외하고 모두 14곳의 포스 데이터를 토대로 산출하였습니다.

*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본사 사무실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가맹점의 평균 영업시간

연도	영업 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15	2,022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당사는 별도의 지역본부(지역총판)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 당사가 직전사업년도(2023년)에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 분	수 단	기 간	지출 비용(단위 : 천원)			비 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9,415	9,415	0	

광고선전	비공개	비공개	9,415	9,415	0	
------	-----	-----	-------	-------	---	--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국민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국민은행	강남중앙지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1동 809-10	02-563-6611

* 귀하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절차와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계좌번호를 은행으로부터 부여받는 경우	①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금예치신청서 작성 → ② 가맹본부가 가맹금예치신청서 은행에 팩스로 발송 → ③ 우리은행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좌번호를 휴대폰으로 안내 → ④ 전송 받은 계좌번호로 은행 방문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가맹금예치	
매장 방문시	① 가맹계약 체결 및 예치신청서 교부 → ② 은행(e-비즈니스사업단)방문 → ③ 가맹금예치신청서 제출 및 가상계좌교부 → ④ 가상계좌에 가맹금 예치	
인터넷뱅킹 이용시	① 가맹계약 체결 및 예치신청서 교부 → ② 은행(e-비즈니스사업단)방문 → ③ 가맹금예치신청서 제출 및 가상계좌교부 ④ 인터넷뱅킹접속 → ⑤ 가상계좌에 가맹금 이체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 사업자가 알아 두어야 할 사항

-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맹점 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가맹점 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조정,중재를 신청한 경우
 -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2번의 가~다 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당사가 (주)서울보증보험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상품에 가입한 경우 위의 가맹금 예치와 관련한 내용은 귀하에게 해당 사항이 없게 됩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당사는 현재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간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조치 시정조치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간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간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도스타코스]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대략 아래의 표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도스타코스]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소요되는 비용 중 예치여부는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귀하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22,000				
가맹비	영업비밀전수비	11,000	계약 체결 당일	기술 전수 전	기술전수 후 소멸
	교육훈련비	4,400		교육 전	교육 후 소멸
	오픈지원비	2,200		오픈지원 전	오픈 지원 후 소멸
	영업표지사용비	4,400		최초계약기간 잔존	최초 계약기간 도과

2) 귀하(기존 가맹점 양수자 포함)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할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없음)

구 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보증금	3,000	계약 체결 당일	계약종료 후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정산 후 반환	계약이행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다음 표

에 기재된 금액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가맹비	보증금	합계
금액	22,000	3,000	25,000

4) 귀하가 그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13]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20평, 66㎡ 기준)

구분	지급대상	금액 (단위:천원)	3.3㎡ 당 금액	지급 기한	비고
총계		71,000~80,000	3,550~4,000	설치 당일 지급	
인테리어	협력사 미지정	44,000	2,200		
간판	협력사 미지정	3,000~10,000	/		
필수설비	협력업체	10,000~11,000	500~550		
주방용품	협력업체	14,000~15,000	700~750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모든 시공권을 부여하나, 반드시 본점을 방문하여 견학 후 시공토록 하며, 영업장의 실측된 도면과 인테리어 시공도면을 준비하여 본점의 자문을 받도록 합니다.

※ 인테리어 공사는 원칙적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시공권을 부여하나, 그러한 경우라도 반드시 모델점을 방문하여 견학 후 [도스타코스]의 컨셉트에 맞도록 시공하며, 영업장의 실측된 도면과 인테리어 시공도면을 준비하여 본사의 자문을 받도록 합니다. 이 경우 본사의 실측도면과 인테리어 시공도면 등의 사용과 감리에 따른 비용으로 3.3제곱미터 마다 4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초도 물품은 연수기간 중 본점에서 인수·인계하고 계약 외 품목 및 수량에 따른 비용은 가맹점주가 납부합니다.

※ 유의사항

– 위 사항은 점포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는 가맹점사업자의 개별시공사항이므로 건물개·보수공사, 철거공사, 전기승압 및 분전함, 가스가설공사, 상하수도공사, 닥트(입상, 급기)공사, 소방설비, 냉난방기 등에 유의하여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5) 가맹계약 체결 및 당사 금전 지급 후 해약 시 위약벌

귀하가 당사에 금전을 지급하거나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 한 후(둘 중 빠른 시점) 일방적인 변심에 의하여 가맹점 개점 전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가 당사에 지급한 금액 중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의 위약벌 규정을 따라 상계처리 후 반환 됩니다.

해약 요청 일자	위약벌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내	정보공개서상의 예치금의 10%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후 5일 이내	정보공개서상의 예치금의 30%
계약 체결 후 5일 이후 가맹점오픈 이전	정보공개서상의 예치금의 50%

6)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입지 선정주체	선정기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 사업자	가맹점 입지선정의 주체는 가맹희망자입니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입지를 선정하는데 있어 점포면적에 따른 외견상의 조연과 해당지역의 부동산 업자를 알선할 수는 있습니다. 조연을 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입점 기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7)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교육기준	계약/채용기준
가맹점사업자	Ⅶ 참조	- 금치산자·한정치산자가 아닐 것 - 만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만18세 이상자	외모단정한 자

8)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도스타코스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물품의 상세한 내역은 첨부한 목록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9) 당사는 가맹금을 납부함에 있어서 분할 납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가맹계약서에 명시된 대로의 이행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부담기준은 [32]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부가세별도)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당사	30만원	매월 5일		소멸성	-
광고분담금	당사	실비	통지일로부터 2주 이내	광고 미시행	광고시행	
교육훈련비	당사	실비	교육 전	교육전	교육후 소멸	점주 요청시에만 적용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간판 비용	가맹본부	협의하여 결정	변경 3일전	-	-	부득이한 경우 가능/귀책사유 고려
인테리어, 시설, 각종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가맹본부	협의하여 결정	좌동	좌동	교체 후	-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절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해당 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해당 없음

▷ 당사는 소스류 등의 일부 품목을 자체 생산하여 조달하고 있으므로 본 항목에서 말하는 차액가맹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회계처리 및 재고관리에 대한 감독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위생, 재고관리 등을 포함한 점포 경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를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와 회계자료를 성실히 작성, 유지하여야 하며, 상품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관리, 감독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새롭게 발생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와의 쌍방 간 계약 갱신에 대한 별도의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갱신된 것으로 보며, 본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의 재계약의 연장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종료 후 조치사항

가맹계약서 제43조의1 [가맹본부 사정에 의한 계약 종료시 조치사항]

①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귀하는 계약관계를 종료하고 계약 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새로운 가맹본부와의 계약관계의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에서 탈퇴할 수 경우에는 당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가맹계약 해지에 해당하므로 귀하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가맹금의 일부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락한 상표 및 서비스표 등의 지식재산권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더 이상 그 독점적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귀하와 협의

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할 것입니다. 만약 대체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객관적으로 만족할 만한 것이 못 되는 경우에는 귀하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가맹금의 일부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원칙적으로 당사는 모든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가맹사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귀하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귀하는 가맹금의 일부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 양도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귀하(양도인)는 최초 가맹계약 시 가맹본부에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해서 계약의 종료일(양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잔존 채무(물품대금포함) 및 손해배상액을 정산하여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잔액을 상환하지만, 보증금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채무액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나머지 채무액을 당사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은 다음의 각 경우에 따라 부담이 발생합니다.

① 잔여계약기간의 양수하는 경우

항목	금액(단위 천원)	비고
영업비밀전수비	11,000	부가세 포함
교육훈련비	4,400	부가세 포함
계약이행보증금	3,000	-

② 신규계약기간의 양수하는 경우

항목	금액(단위 천원)	비고
가맹비(교육훈련비포함)	22,000	부가세 포함
계약이행보증금	3,000	-

이러한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29] 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그 밖의 부담 비용

귀하가 그 밖의 추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5) 계약 종료 후의 조치사항

본 계약이 해지 또는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되면, 귀하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 [도스

타코스] 운영권을 상실하며, 당사와 귀하는 즉시 다음 각항의 조치를 취하고, 원상회복 및 정산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귀하는 당사로부터 제공받은 상호나 상표 등 당사의 가맹점임을 나타낼 수 있는 영업표지 등의 사용을 중지하고 [도스타코스]가맹점임을 표시하는 모든 공작물, 건물 내외 장식, 기타 상징물을 즉시 철거하거나 제거하여야 합니다.

나. 그 외에 점포운영과 관련하여 당사로부터 제공받거나 대여 받은 운영매뉴얼, 규정집, 문서, 도면, 도서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 등 영업비밀이나 고객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는 행위를 하거나 당사의 명성과 브랜드의 가치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만약 귀하가 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계속하여 당사의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는 등 본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라. 귀하께서 이러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는 직접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위 시설물 철거비용의 상환을 부담 할 수 있습니다.

마. 당사와 귀하는 본 계약관계의 종료와 동시에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도스타코스]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의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그 거래상대방을 추가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도스타코스 가맹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



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는 것은 없습니다.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도스타코스]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 방과 거래를 요구하거나 또는 권장하는 것에 대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대가를 수수하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2) 당사가 [도스타코스]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관계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해당 없음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이외 추가 상품을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 품 명	소프트 타코	칠리빈
	하드 타코	칠리비프
	빠스톨 타코	후레시 살사
	타코 세트	후레시 피클

	치즈 껌사디아	싸워크림
	고기 껌사디아	나초 칩스
	새우 껌사디아	칠리 껌 껌소
	껌사디아 셋트	추가 고기
	플라우따	리프라이드 빈
	칩스 앤 살사 나초	통마늘 구이
	칩스 앤 껌 껌소	매운 노란고추
	치즈 살사 나초	아스파라거스
	칠리 빈 &비프 나초	핫소스 포장
	나초 피에스타	탄산음료(콜라, 스프라이트) 리필
	프라이스	탄산음료 병
	칠리 빈 &비프 프라이스	레몬 에이드
	고기 라이스 부리또	라임 & 레몬 에이드
	새우 라이스 부리또	블루 레몬 에이드
	감자 부리또	레몬 슬러시
	새우 감자 부리또	오르차따
	고기 감자 부리또	코코넛 밀크
	감자 애그 부리또	복숭아 아이스티
	야채 부리또	오렌지쥬스
	볶은야채 부리또	키위 쥬스
	고기 아보카도 부리또	토마토 쥬스
	고기 새우 부리또	아메리카노
	고기 파히타 부리또	까페 모카
	리프라이드 빈 & 브로컬리 부리또	까페 라떼
	리프라이드 빈 & 고기 부리또	핫 초코
	고기 아스파라거스 부리또	페리에
	고기 통마늘 부리또	사과쥬스
	고기 치미창가	아리조나 아이스 티
	새우 치미창가	코로나
	또스따다	술
	앤살라다	도스에끼스
	과카몰리	네그라 모델로
	아보카도	프라임맥스
	나초치즈	데킬라 슬레마
		데킬라 썬라이즈
		데킬라 샷
		마가리따
제한 내용 및 조건	당사의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명성의 유지를 위하여 왼쪽에 기재된 품목만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책임	▶1회 위반: 1주일 전 서면통보 후 물품공급중단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해지	
비고	당사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신상품을 출시하게 되므로 본 정보공개서에서 표시하는 품목 외에도 추가로 판매품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사전에 통지하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합니다.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경쟁업체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을 경쟁업체 또는 다른 가맹점에 공급 및 판매할 수 없습니다.	1회 위반 : 구두경고 2회 위반 : 서면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 계약해지
다른 가맹점 사업자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본점과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본점과 달리 기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강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	-------------

가맹본부의 영업과 동종의 업종	가맹본사	계열사
	DOSTACOS 도스타코스	해당 없음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 기준 반경 1000m를 원칙으로 하며 협의에 따라 조정함.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 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통해서 기존 영업지역을 위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도스타코스]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도스타코스]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을 수 있는 동일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을 수 있는 동일 ·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온라인	11번가	www.11st.co.kr	부리또 깨사디아	간편조리냉동제품
	쿠팡	www.coupang.com		
	지마켓	www.gmarket.co.kr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 ·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① 직전 사업연도 해당 영업표지의 국내 판매 매출액 중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국내 온라인 ·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87.3%	3.9%	0%	8.7%
------	-------	------	----	------

- ②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해당 영업표지의 전체 상품 수 중 가맹점 전용상품 수의 비중 및 온라인 전용상품 수의 비중

연도	가맹점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6%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 ▶ [도스타코스]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5]년이며, 갱신시에는 계약이 [1]년씩 연장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 부터 최대 10년간 주어집니다. 다만 당사에게 정당한 사유(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3) 계약 갱신거절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가맹점사업자가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조건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계약 갱신에 따른 갱신비용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47조
당사 또는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4) 계약종료,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가. 당사는 아래와 같은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점포의 규모, 대표자 등의 가맹점의 표시에 해당하는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3조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허용한 영업표지의 사용범위 외에 서면 동의 없이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4조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보유한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4조3항	
가맹점사업자가 공급품 대금의 납입을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33조3항	41조 1항
가맹점사업자가 개점 이후 교육에 참석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	20조	

가맹점사업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21조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제3자 명의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2조	
가맹점사업자가 관리감독 기준에 의한 시정요구를 3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25조	
가맹점사업자가 거래상대방 제한 미준수·승인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통일성 유지를 위한 요구 품목을 사용하지 않아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경우	29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사전협의 없이 가격을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28조 1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가맹점 판매 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	28조 1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승인받지 않고서 요구 품목을 자점매입하거나 품질검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32조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복장 규정을 위반하거나 영업시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40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후 시설 보수를 거부하는 경우	10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가맹점 설비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15조	
가맹점사업자가 회계자료 통지 등의 통지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23조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광고의 광고비 분담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34조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판촉활동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35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판촉물 등을 제작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35조	
가맹점사업자가 사전 승인 없이 양도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48조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할 경우	15조, 28조, 33조, 35조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3개월 이상 개점이 지연되거나 최초 개설 비용의 지급을 지키지 않는 경우	41조 1항	

나. 당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41조 3항 각호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 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다. 당사/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41조 2항 각호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처리되거나 강제집행을 당하는 경우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라.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하고 1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여한 영업지역에 부당하게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설치하는 경우	41조 4항 각호
당사가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공급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공급을 거절하는 경우	
당사가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을 경우	

마. 그밖에 가맹점사업자가 위에 해당하는 해지사유 이외에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1개월 전에 그 사실을 당사에게 알리고 상호협의 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계약 수정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가. 당사는 계약기간 내에는 계약 내용을 변경 하지 않습니다.

나.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등 관계 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한 본 계약서 수정이 불가피 할 경우, 당해 법령에 의하여 귀하의 동의 없이 해당 조문에 대해 특약사항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사업의 통일화를 위한 영업방침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하에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라. 또한 계약 갱신 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180일에서 90일 사이에 계약의 변경 조건을 통지하고 재계약 여부를 묻게 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귀하의 서면요청이 있은 후 본사는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허가 유무를 통지하게 되며,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또한 양수인은 가맹본부에 새로운 계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잔여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가맹계약 조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정보공개서 제공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양수인은 원칙적으로 잔여계약 기간에 대하여 가맹점운영권이 인정되며, 양수에 따른 교육이수 및 정보공개서상의 양수인의 부담비용(정보공개서상의 양수가맹금 등 부담비용)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양수인이 원할 경우 신규가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직계존비속의 영업 승계의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승인을 얻은 후 영업개시 전까지 교육을 이수하고 본 가맹점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법적효력 발생 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상속개시 3개월 내 서면요청→승인여부통지→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당사 승인 시 가능	상동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증빙자료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가맹본부의 증빙자료 검토 후 승인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업무위탁	당사 승인 시 가능	상동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증빙자료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가맹본부의 증빙자료 검토 후 승인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잔여 계약기간을 부여하되, 가맹비는 면제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개점 전 최초교육비는 상속인이 부담합니다. (대리인, 위탁인 또한 같습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본 가맹계약 기간 중에는 경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가맹본부의 영업과 동종의 업종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문의 : 당사 (TEL 593-5904)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도스타코스”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10:00 ~ 22:00 (상권에 따라 협의 조정)	매월 26일 이상, 주6일 이상 점포를 개장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휴업할 수 없음

- ※ 귀하께서 개인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고 당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을 비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점포를 점검하고 본사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프로그램취급여부, 청결 및 정돈 상태, 서비스 상태, 매장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 관리, 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맹점의 월 매출, 연 매출내역에 대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하여 점포 감독은 본사에서 미리 제공한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을 진행하고, 점검결과를 쌍방이 서명하여 가맹본부에서 보관하도록 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일정 비율에 따라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성격	부담비율		분담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전국광고	브랜드광고	50%	50% (전체가맹점)	산출의 근거를 서면을 통해 제시	전국광고(TV, 라디오, 5대 일간지 등)
	서비스/상품광고				
	가맹점모집광고	100%	없음	해당 없음	
지역광고	가맹점매출증진	50%	50% (지역가맹점)	해당 없음	지역단위 각 매체광고
개별광고	가맹점매출증진	없음	100%	해당 없음	단독광고

판촉행사	할인행사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행사계획 공고→가 맹점부담액 제시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행사 시행→종료 후 최 종분담금 확정	판촉행사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 업자의 70%이상 의 동의시 전체 적용
	증정행사	증정상품 출하가 50%	증정상품 출하가 50%	상동	상동
	팸플렛 등 제작	판촉물 제작비용 50%	판촉물 제작비용 50%	상동	상동
	기타 개별행사	행사에 따라 유동적 (2013 년 자료 없음)	상동	상동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사업의 영업표지를 보호하고, 가맹사업의 취지에 반하지 않은 경우, 가맹점사업자 자신의 비용으로 광고 및 판촉을 진행할 수 있으며, 사전에 당사와 협의를 거쳐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광고나 판촉 활동 등을 위한 팸플렛, 전단지, 카다로그, 쿠폰 등의 제작은 [도스타코스]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관리를 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당사에 그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9.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판촉/홍보 매뉴얼 그밖에 영업활동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 합니다.

귀하는 가맹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영업비밀이 담긴 서류 등의 내용을 인쇄, 복사, 대여, 공개할 수 없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의무는 본 계약의 유지기간은 물론이고 종료 후에도 3년간 유지되며 위 내용을 위반하여 당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민,형사사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10.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가맹계약서 제46조 위약금규정)

- 1) 귀하가 당사의 영업표지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하여 사용하거나
- 2) 영업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 3) 당사의 서면동의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휴업한 경우
- 4) 계약종류 후 정산서를 받은 날까지 영업표지의 사용을 철회하거나 제거하지 아니한

경우

5) 대금결제를 연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6) 당사의 서면동의 없이 임의로 제조한 상품 등을 판매한 경우

7) 귀하의 고의 또는 과실로 100일 이내에 개점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가맹점사업자는 당사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5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66제곱미터 기준)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약 45일 내외	95,000~104,000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 45	-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D- 45~44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출점가능성 조사	D- 44~31	-
출점 협의	- 개설 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 선 제공	D- 31	-
가맹계약 체결 가맹금 예치	- 계약서 체결 → 비용확인 - 예치기관 지정 → 절차 소개	D- 30	32,000
점포실측/설계	- 점포실측→견적산출	D- 29~28	-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비용입금→시안확정→공사시작	D- 28~27	36,000(인테리어) / 3,000~10,000(간판)
인테리어 및 간판 공사	- 공사 실시	D- 27~5	
인허가 취득	- 사업자등록증 신청	D- 15~5	-
교육 및 훈련	- 이론교육, 실습교육	D- 26~5	가맹비에 포함
초도상품 등 입고	- 점포 정리정돈 - 물품 등, 비품 등 입고후 정리	D- 5~3	24,000 ~ 26,000
가맹점 가오픈	- 영업시작	D- 3~1	-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 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 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 상기일정은 개별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표에 있는 비용만을 지급받고 있으며, 이외에 발생하는 실비 부담은 당사와는 별도로 가맹점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부담하여야 합니다.

-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위 표상의 소요금액은 점포 임대관련 비용, 건물 개·보수공사, 철거공사, 전기 승압 및 분전함, 가스가설공사, 상하수도공사, 닥트(입상,급기)공사, 소방설비, 냉난방기/오디오 구입비용은 별도입니다.

2. 분쟁해결 절차

당사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맹거래사 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소송은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주소지나 가맹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점포환경 개선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점포환경개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분할지급 시 절차> ○ 가맹점 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	--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판매촉진행사 시 특별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 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	가맹본부 부담	문의 : 당사 (TEL. 1544-8315)

		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 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 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 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 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 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 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 당사 (TEL. 1544-8315)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 없음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도스타코스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도스타코스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단위: 천원/부가세포함)	비고
개점 전 최초교육	메뉴 레시피 교육	8시간 X 22일	최초 가맹금에 포함(22,000)	
	가맹점 운영 교육	1일 X3 H		
개점 직후 교육	메뉴 레시피 교육	8시간 X 22일		
정기교육		3시간	실비	-외부 강사 초빙시 추가 실비 발생
비정기교육		3시간	실비	

3.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계약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 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할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점이 지연 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교육 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가맹점운영권 제한 사유 및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1. 직전 사업연도 직영점 목록 및 주소

연번	지역	직영점명	주소
1	서울	한남동점	서울시 용산구 한남대로 18길 26, 지하1층

2. 직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2023년 말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약 8년 3개월	직영점 1곳

3. 직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273,342	POS 데이터 기준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02-593-5904)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종합상담과(02-2023-4010) 또는 가맹유통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 [2023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2. [2022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3. [2021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서

◆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

가맹본부 회사명				영업표지 (브랜드)	
제공확인	작성 예시 :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작성 란) :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제공받은 장소
가맹희망자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위의 표의 빈칸 모두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의 주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2)가맹본부의 가맹사업현황
- 3)가맹본부 및 임원의 법위반 사실
- 4)가맹사업자의 부담
- 5)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6)가맹점 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시간
- 7)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8)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인근 가맹점 현황표 제공 확인서

◆ 인근 가맹점현황 문서 제공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중인 가맹점을 아래 표와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합니다.

가맹희망자 장래 점포 예정지 _____

No.	상호	소재지	전 화 번 호
1			
2			
3			
4			
5			
6			
7			
8			
9			
10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현황표를 제공하였으며, 가맹희망자는 인근 가맹점현황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맹본부: [_____] 대표 _____ (인)

가맹희망자: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